

인천제일교회 정관(안)

2025. 10.8.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제일교회

(전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는다. 또한 성경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속됨을 믿는다.

서해를 굽어보는 응봉산에 위치한 우리 교회는 1946년 이북 출신 장로교 교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창립되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굳건한 신앙과 이웃에 대한 섬김의 전통을 이어받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에 대한 책임과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기도로 준비한다. 민족 복음화 운동의 발상지로서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독교 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복음의 전파를 실천한다. 아울러 제일학원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고, 인천지역 장로교회의 모태로서 건실한 한국교회의 성장에 기여한다. 이에 교회의 사명을 실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관을 당회의 심의와 공동의회의 의결로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제일교회(아래에서는 “본 교회”)라 부른다.

제2조(소재지)

본 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39번길 54(신포동)에 위치한다.

제3조(소속)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노회 동부시찰에 속한다.

제4조(목적)

본 정관은 본 교회 내의 조직과 기구의 한계, 교인의 권리와 의무, 교회 재산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성경적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조직)

- ① 본 교회의 조직으로 최고의결 기구인 공동의회, 행정 및 치리를 위한 당회, 재정 및 수납 등을 위한 제직 회를 두고, 실행을 위한 기구와 기관 및 부서를 둔다.
- ② 실행을 위한 기구와 기관 및 부서 설치에 당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2장 교인

제6조(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제7조(교인의 구분)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 ①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 ② 유아세례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6세 이하)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 ③ 아동세례교인 : 7세부터 12세 이하로서 세례를 받은 자
- ④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 교인으로서 입교한(13세 이상)자 또는 원입교인(13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제8조(교인의 권리와 의무)

- ① 세례교인(입교인)과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을 가진다. 또한 세례교인(입교인)과 아동세례교인으로서 18세 이상인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갖는다.
- ② 교인은 공동예배 출석과 교회의 치리에 순종할 의무와 헌금의 의무를 갖는다.
- ③ 각자 받은 능력에 따라 봉사할 의무가 있다.

제9조(직원의 구분)

- ① 본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 ②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그 직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 ③ 임시직은 전도사와 집사이며 그 직무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되는 경우 70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 직무할 수 있다.

제3장 공동의회

제10조(조직과 운영)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로 공동의회를 조직·운영한다.

- ①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시무교역자 및 무흠 세례교인(입교인)과 아동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 ② 공동의회 의장은 당회장으로 하고, 서기는 당회 서기로 한다.

제11조(소집)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의결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은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이 경우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성원)

공동의회는 광고된 일시, 장소에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한다.

제13조(결의사항)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 ② 제직회가 청원한 사항
- ③ 예산 및 결산
- ④ 직원 선거
- ⑤ 정관의 제정, 개정
- ⑥ 상회가 지시한 사항

제14조(결의방법)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4장 당회

제15조(구성)

당회는 본 교회의 정책 수립과 의결 및 기구를 지도·감독하는 기관으로, 본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로 구성한다.

제16조(개회성수)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7조(임원)

당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① 당회장 : 본 교회와 당회를 대표하며, 당회, 공동의회, 제직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서기 : 당회와 공동의회의 기록 및 모든 문서를 작성·관리하며, 당회의 결의로 임명한다

제18조(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 ① 당회장은 본 교회 시무목사(위임목사, 담임목사)가 된다.
- ②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또는 연명)로 요청한 인천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
- ③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 유고 시,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제19조(직무)

- ①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 ② 교인의 이명, 세례,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증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③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 ④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 ⑤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 ⑥ 노회에 파송할 총대 장로를 선정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 ⑦ 범죄한 자를 소환 신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징한다.
- ⑧ 본 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 ⑨ 교회 정관의 제정, 개정을 발의하고, 정관 시행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 개정한다.
- ⑩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회집)

- ① 정기 당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 회집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는 당회장이 당회원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다.
- ② 임시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하되, 후보에 게시하거나 당회원에게 전화, 문자 또는 구두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소집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과반수가 당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제21조(성원 및 결의)

당회는 당회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장 제직회

제22조(구성)

제직회 회원은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로 한다.

제23조(임원)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부회장 1인과 서기 1인, 회계 1인은 제직회에서 선정하되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제41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4조(소집 및 광고)

- ① 제직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목사가 소집한다.
 1. 정기 제직회는 매월 첫째 주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는 제직회장이 당회원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제직회는 제직회장이 제직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교회 제직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② 제직회의 소집은 회장이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여야 한다.

제25조(정족수 및 결의사항)

- ①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 ② 제직회의 심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2.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3.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4. 부동산 매매
 5. 당회가 요청한 사항
 6. 기타 중요 안건 협의

제6장 직원 선거 및 임직

제26조(장로)

- ① 후보 자격
 1.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
 2. 주일을 성수하여 공동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십일조 등 헌금 생활이 양호하며, 교회 부서에 봉사하고,

교회(당회)의 치리에 순종하는 자

② 선임방법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하고,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③ 임직 자격

장로로 피택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장로의 사임과 사직, 휴무, 복직에 관한 사항은 총회 헌법에 따른다.

제27조(안수집사)

① 후보 자격

1.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남자

2. 주일을 성수하여 공동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십일조 등 헌금 생활이 양호하며, 교회 부서에 봉사하고, 교회(당회)의 치리에 순종하는 자

② 선임방법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투표는 3차까지 할 수 있다.

③ 임직 자격

안수집사로 피택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정관 외 안수집사의 사임과 사직, 휴무, 복직에 관한 사항은 총회 헌법에 따른다.

제28조(권사)

① 1. 후보 자격

1. 단정하고 참소하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된 여자

2. 주일을 성수하여 공동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십일조 등 헌금 생활이 양호하며, 교회 부서에 봉사하고, 교회(당회)의 치리에 순종하는 자

② 선임방법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며, 투표는 3차까지 할 수 있다.

③ 임직 자격

권사로 피택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정관 외 권사의 사임과 사직, 휴무, 복직에 관한 사항은 총회 헌법에 따른다.

제29조(집사)

집사는 다음 자격을 갖춘 자로 당회의 의결을 거쳐 당회장이 임명한다.

① 진실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25세 이상인 자

② 주일을 성수하여 공동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십일조 등 헌금 생활이 양호하며, 교회 부서에 봉사하고, 교회(당회)의 치리에 순종하는 자

제30조(명예 안수집사, 명예 권사)

당회는 은퇴 집사에 대하여 명예 안수집사나 명예 권사로 추대할 수 있고, 그 자격요건은 당회가 정한다.

제7장 이명 항존직

제31조(본 교단 소속 타 교회에서 이명한 항존직)

① 장로

장로가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적한 경우에는 교회 등록 후 2년이 경과하면 당회의 의결을 거쳐 협동장로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안수집사, 권사가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적한 경우에는 교회 등록 후 1년이 경과하면 당회의 의결을 거쳐 협동안수집사, 협동 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32조(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적한 항존직)

- ① 장로가 타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적한 경우에는 교회 등록 후 3년이 경과하면 당회의 의결을 거쳐 협동 장로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안수집사, 권사가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이적한 경우에는 교회 등록 후 2년이 경과하면 당회의 의결을 거쳐 협동안수집사, 협동 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33조(이명 은퇴 항존직)

이명 은퇴 항존직의 경우 교회 등록 다음 연도 이후에 협동 은퇴 항존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8장 담임(위임)목사, 부교역자 및 선교사

제34조(담임목사, 위임목사)

- ① 청빙 자격
총회 헌법에 입각하여 청빙 자격을 부여하되 세부적인 자격은 청빙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청빙 위원회 구성 및 해산
 1. 담임목사 또는 위임목사 청빙은 당회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한다. 단 현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별도의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당회는 청빙위원회 구성 시 본 교회 교인 전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청빙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청빙위원회는 담임목사나 위임목사의 취임식이 끝나면 해산하며, 청빙 경과를 교회와 당회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청빙 의결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④ 위임(담임)목사의 사임과 사직에 대한 제반 사항은 총회 헌법에 따른다.

제35조(담임목사, 위임목사의 직무)

위임(담임)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제36조(위임목사의 정년)

위임목사의 정년은 70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37조(위임목사의 안식년)

위임목사는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제38조(담임목사, 위임목사 처우)

위임(담임)목사 처우는 당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39조(부교역자)

- ① 정의 및 구분
 1. 부교역자는 위임(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교육목사 포함), 전도사, 교육담당 교역자를 말한다.
 2. 교인의 영적 성장 및 교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교역자를 둘수 있다.
 - 가. 부목사 : 전임 부목사, 비전임 부목사
 - 나. 전도사 : 전임 전도사, 비전임 전도사
 - 다. 교육담당 교역자 : 교육목사, 교육전도사
- ② 자격
 1. 부목사 :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자
 2. 전도사 :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자
 3. 교육담당 교역자 : 교육목사는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은 자로 하고, 교육전도사는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 재학생 및 졸업자로 한다.
- ③ 직무
위임(담임)목사를 보좌하여 교회와 성도를 섬긴다.
- ④ 임용 및 임기
 1. 위임(담임)목사의 추천으로 당회 결의 및 제직회의 동의 후 위임(담임)목사가 임명한다.
 2. 전임 부목사와 전임 전도사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당회의 의결을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3. 기타 부교역자의 임기는 1년이며 당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재임용을 받아야 한다.

⑤ 처우

부교역자의 처우는 매년 당회에서 결정한다.

제40조(선교사의 임용, 직무와 임기)

교회는 필요에 의하여 선교사를 임용하되, 임용 조건, 자격, 직무, 임기, 파송, 지원 등의 제반 사항은 당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조직 및 관리직원

제41조(국, 부서, 위원회)

- ① 본 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직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 유사 부서들을 묶은 국(局),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부서와 국, 각종 위원회 등 교회 조직 설치 및 폐지는 정관 변경 없이 당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③ 각종 위원회는 당회 산하에 설치하고 당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42조(교회학교)

- 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교회학교를 운영한다.
- ② 교회학교는 당회에서 정한 해당 부서에서 관리 주관하고, 교회학교 교장은 위임(담임)목사가 맡는다.
- ③ 해당 부서와 교회학교 세부 부서 조직은 당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3조(찬양대와 찬양팀)

- ① 예배 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찬양대와 찬양팀을 운영한다.
- ② 찬양대와 찬양팀은 당회에서 정한 해당 부서에서 관리 주관한다.
- ③ 해당 제직부서와 세부 조직은 당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4조(부속기관 - 학교법인 제일학원)

- ① 본 교회는 학교법인 제일학원 산하 인성초등학교, 인성여자중학교, 인성여자고등학교를 통해 지역 사회의 학생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한다.
- ② 본 교회는 학교법인 제일학원의 교육 목표 달성 및 학원 선교를 위해 학원 선교비를 지원하고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한다.
- ③ 학교법인 제일학원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제일학원 정관에 의한다.

제45조(자치기관)

- ① 위임(담임)목사와 부교역자로 교역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남녀 연령별 조직으로서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를 구성하고, 연합을 위해 남선교회 협의회와 여전도회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직분 별로 장로회, 안수집사회와 권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④ 동호인 별로 각종 선교 동아리 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 ⑤ 자치기관 조직 구조는 당해 연도 정책 당회를 통해 결정한다.
- ⑥ 자치기관의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회칙에 의한다.

제46조(교구 및 구역)

- ① 교인 개인과 가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심방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을 구성하고 유사한 구역을 합쳐 교구로 관리한다. 단 관할 구역과 상관없이 연령대 등을 감안하여 교구를 둘 수 있다.
- ② 교구는 교인의 분포, 지리적 여건,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당회에서 정한다.
- ③ 교구에는 교구장과 구역장, 권찰을 두며, 그 임명은 당회장이 한다.
- ④ 당회장은 교구를 전담하는 담당 교역자를 둘 수 있다.

제47조(교회 조직 현황)

본 정관 제정 당시 본 교회 조직은 별지 교회 조직표와 같다.

제48조(관리직원)

- ① 관리직원은 사무직원, 시설관리직원으로 구분한다.
- ② 관리직원의 인사, 복무, 급여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예산 및 감사

제49조(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0조(예산편성과 통제)

- ① 교회의 예산은 선교, 교육, 봉사 및 교회 운영에 있어서 균형 있게 배분하여 수립한다.
- ② 예산은 인준범위 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되 적절한 통제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③ 예산 편성과 통제는 '재정 및 재산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예산위원회)

- ① 각 부서별로 수립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예산위원회를 둔다.
- ② 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다음 연도의 예산 및 해당년도의 결산을 보고한다.
- ③ 예산위원회는 부서별 수립예산의 적정성, 건전성, 형평성을 검토, 심의, 조정한 후 당회에 제출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건전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당회에 제출한다.
- ④ 예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예산처리 기한)

- ① 각 부서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예산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예산위원회는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수립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제53조(감사)

- ① 건전한 예산 편성과 재정 및 행정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를 두어 내부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당회의 결의로 외부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3인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향존직분자 중에서 당회에서 선임한다.
- ③ 감사는 정기감사(연말 결산 시)와 수시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를 당회에 보고한다. 단 재정에 관한 사항은 당회를 거쳐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보고한다.
- ④ 상세한 운영지침은 당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제11장 재산 및 재정의 관리

제54조(재산의 정의)

- ① 교회의 재산은 교회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동산, 시설 및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재산으로 한다.
- ② 본 교회의 예배당과 토지를 포함한 부속건물, 기타 물품은 교회 재산 목록에 등재한다.

제55조(재산 관리 및 처분)

- ① 본 교회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총회 산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이라 한다)에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편입 보존한다
- ②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되지 아니한 본 교회 부동산은 본 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 ③ 본 교회 부동산의 관리에 당회가 맡고, 부동산 처분(매매, 가등기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은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동산의 관리 및 처분은 제직회가 맡는다.

제56조(재정 관리)

- ① 수립된 예산안에 의거 재정 담당 부서에서 모든 재정을 관리한다.
- ② 각 부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재정을 사용하여야 하며 매월 제직회를 통해 예산 집행결과를 보고한다.
- ③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특별회계 등의 재정은 당회의 의결과 제직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12장 정관의 제·개정 및 통상관례

제57조(정관의 제·개정)

- ① 정관의 제·개정은 당회에서 발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② 정관의 개정 발의는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할 시 당회에 발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정 발의를 하여야 한다.

1. 제직 2/3 이상의 서명
2. 재직 안수집사 2/3 이상의 서명
3. 재직 권사 2/3 이상의 서명
4. 재직 장로 2/3 이상의 서명

③ 정관의 제·개정은 재직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개정한다.

제58조(통상 관례)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헌법 및 해석서와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의 제정은 공동의회에서 통과하고, 공동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정관 시행일 이전부터 시무하는 전임 부목사와 전임 전도사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단 교회에서 필요할 경우 당회 결의로 재임용할 수 있다.

시무 기간	임 기
5년 이상인 경우	본 정관 시행 후 3년
5년 미만인 경우	본 정관 시행 후 5년

교회조직도(2025. 공동의회 통과시점 명기)

